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8. 24.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8월 24일(수) 14:00~18:1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45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3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4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내용에 따른 의견은 없음. 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세 차례 행사한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임원 겸직금지’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두는 문제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일정기간 유효기간을 두되 그 유효기간 내에 가급적 규정을 개정해서 규정화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림.
- (보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3년에는 미비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던 측면이 있었음. 그 이후에 규정개정이 이루어졌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치명령은 시급한 수단의,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조치기간, 유효기간 내에 법령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46호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건에서 회사는 OOOOOOOO(주)에 대한 주관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상장일에 이르러서야 회사계좌에 주식이 입고되어 실권주를 처분하여 이를 처분하였음. 본건 규정의 문언에 의할 때 규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상장 이전에 발행된 구주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런데 본건의 경우 상장으로 발행된 공모주식을 취득한 사안으로 본건 규정의 적용대

상으로 볼 수 없음. 본건 규정의 제재 취지는 공모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개정 이유, 2016년 법령해석 회신문에도 잘 나타나 있음. 앞서 말씀드린 규정의 문언해석, 규정의 제정취지 등에 의할 때 본건 규정은 상장으로 비로소 발행되는 주식인 IPO 전 단계에서 주관회사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임. 주관회사로서는 공모가격을 높게 형성하고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적정가치로 평가되기 이전에 판매하여 단기차익을 실현할 유인이 있음. 반면, 상장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이 공모가격으로 정해져 있음. 주관회사로서는 실권주 인수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공모가격을 높게 산정할 이유가 없음. 한편, 검사국에서는 2017년 유권해석을 하나의 주요근거로 하여 본건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됨. 그런데 본 유권해석은 설립 당시 5%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 사안으로써 주관업무에 따라 공모발행된 실권주를 처분하는 사안과는 분명하게 구분됨. 반면, 본 사안의 경우 상장 업무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SPAC의 특성에 따르는 문제가 없음. 본건 규정과 목적이 유사한 의무보유 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또한 실권주 인수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음. 이와 같이 실권주 처분기한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 그 어디에도 상장업무에 따라 인수한 실권주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음. 그 이유는 실권주는 공모가격 형성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 활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임. 말씀드린 대

로 실권주의 특성 및 업계의 인식, 본건 규정의 물리적·체계적 해석, 2017년 유권해석에 따라 실권주 일반에 대한 처분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에서는 결코 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위반동기는 ‘하’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OOOO건의 경우 2017년 유권해석이 의문없이 적용되는 SPAC사안이기 때문에 SPAC사안이 아닌 본건에서 선례로 작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금융소비자 손실초래 요건과 관련하여 회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중처분이 아닌 시간외매매 방식을 선택하였음. 그리고 OOOOOOOO(주)가 속한 바이오헬스케어 업종의 당일 주가변동 및 상장 초기 종목의 주가변동 특성, 그리고 본 주식의 경우 상장 후 2주간 공모가 대비 50%가량 상승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에이비엘바이오(주)의 당일 주가하락과 본 처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다음으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공모가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준에 취득한 구주매도가 아니고 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실권주만을 매도한 것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위반으로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본건 규정의 문언, 제정 취지, 유권해석 등에 의하면 30일 내 실권주 처분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럼에도 현재의 조치예정 수준은 고의적·의도적으로 구주를 매도한 경우와 같은 수준임. 특히 본건에서의 개인의 책임이 담당자를 금융업계에서 사실상 퇴출시켜야 마땅한 정도로 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 주관 계약 체결일이 2017년 2월28일이고 상장일이 2018년 12월19일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공모가는 언제 산정이 됐는지?

▶ (진술인) 2018년 12월7일부터 8일 그 당시 수요예측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됐고 가격공시는 2018년 12월10일에 된 것으로 확인됨.

○ (위원) 2018년 12월10일에 공모가격 공시가 된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이 경우(case)에 실권주가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 (진술인) 수요예측을 할 당시에는 공모가격이 그 수요예측을 반영해서 책정됐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로 판단이 되었음. 그런데 공모가격을 하고 상장일에 이르렀을 때 당시 OOOOO 사태가 불거졌고, 헬스케어 3형제라는 주식이 여러 가지로 출렁거릴 때여서 급하락과 급반등을 반복하던 시기로 실권주가 그 상장일 전후로 발생하였다고 파악하고 있음. 당시 바이오·헬스케어 부문(sector) 내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하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해당 종목에 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 공모가 정할 당시에 실권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진술인) 예측하지 못했음. 왜냐하면 저희 IB 입장에서는 당시 공모가 밴드(band)는 13,000~17,000원 수준으로 15,000원으로 공모 중간 수준에서 결정이 됐음. 만약 저희가 실권이 날것으로 예측이 됐다면 가격을 15,000원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을 했을 것임. 그래서 당시에 수요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가격을 결정했을 때는 이렇게 100억 원 정도 실권주가 날 것으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음.

○ (위원) 공모가 대비 처분이익이 어느 정도 낮는지?

▶ (진술인) 실권주가 발생했고 실권주 수량이 꽤 커서 당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음. 그런데 당시 저희가 전년도의 법령해석 회신문, 실권주를 한 달 후에 판다는 것은 캐치업(catch up)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저희가 세웠던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음. 첫 번째로는 이 정도 실권주가 났을 때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책임 있는 IB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님. 두 번째로는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외대량매매로 이것을 꼭 처분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권주 물량의 소화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있을 때 처분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웠음. 그런데 저희가 처분을 한 2018년 12월21일 그때에는 거래량이 당일 기준으로 한 1,000만 주

정도 됐고, 그리고 공모가보다 주가가 상회했고 또 일부 블록딜(Block deal)을 통해서 그 주식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그런 원칙에 입각했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게 됐음. 저희가 매각한 가격은 주당 공모가보다 1,000원 정도 위에 있었던 16,000원 정도에 매각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위원) 2017년 10월12일 법령해석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었는지, 만약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의 취지를 비추어봤을 때 2017년 10월12일자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 (진술인) 지금 2017년 10월 법령해석 회신문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SPAC 사안이고 2021년에 증선위에서 의결한 OOOOOO 건도 SPAC 사안에 관련된 내용임. 이 모두 5% 이상의 주식을 먼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권주가 혼장되어 있기 때문에 30일 내에 팔면 실권주를 판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구주를 판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주식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다만, 그 목적에 시장에 매각하여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음.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건 규정의 취지라면 단순히 IPO. 즉, 상장업무에 있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됨. 우리는 지금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으로 발생하는데 유상

증자에서 발생하는 실권주를 바로 처분하는 것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아무런 제약이 없음. 즉, 이 규정은 결국 신규 상장하는 공모가격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 공모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주관 회사가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공모가격을 부당히 높이지 않기 위한 방지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정 목적에도 나와 있고 2016년 유권해석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권해석은 오로지 SPAC 사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유권해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2017년도 유권해석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제도를 만든 것은 2019년 4월임. 사실 공식적으로 2017년 10월에 이 유권해석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모든 한국투자증권(주)에 있는 쏘임직원들이 다 이것을 인지하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음. 실무를 담당하는 일부는 알고 있었을지 모를지언정, 다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SPAC 사안이어서 오로지 구주를 갖고 있지 않고 실권주만 발생하는 사안에서 적용된다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2019년 4월부터 이후부터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준법감시 부서가 이러한 취지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실권주만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30일 내에 처분하는 것을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활동을 한 내역들이 있고 저희가 그것을 제출하였음.

- (위원) 2017년 10월12일자 법령해석의 내용을 회사에서 인지하고 계셨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 ▶ (진술인) 저희는 사실 이 실무를 할 때는 인지하지 못했음.
-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권주 매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와 같이 실권주를 단기간 내에 처분한 사례가 있는지?
- ▶ (진술인) 업계에서 다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음.
- (위원) 실권주를 취득해서 30일 이내에 매각한 사례가 실무에서 많이 있는지?
- ▶ (진술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검사국이나 금융위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지?
- (보고자) 업계 사례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사례조사를 한 바 있었음. 그때도 많은 회사들이 관련 규정들을 지키고 있었음. 실권주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30일 그 부분들은 준수하면서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음. 일부 회사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과거 저희가 제재하면서 확인한 바가 있었음.
- (위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중의 일부도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사례가 존재하기는 했는지?

- (보고자)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권주에 대해서 동일한 위규를 한 경우도 있었음. 하지만 보다 많은 다수의 회사들은 실권주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30일 기한을 준수하면서 매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
- (위원)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실권주를 처분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행이 되었는지?
- (보고자) 저희가 별도로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음. 그 당시 제재와 관련된 사례조사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었음.
- (위원) 처분한 115억 원이 IPO 규모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 ▶ (진술인) 당시의 총공모금액은 900억 원이었음. 공모금액은 900억 원이었는데 그중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되어야 되는 금액이 180억 원이었음. 그리고 그중 약 102억 원 정도가 실권이 낮았음.
- (위원) 아까 내부회의 거쳐서 책임 있는 IB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음. 그런데 실권주라고 해도 규모가 전체 IPO의 10%가 넘어가는데 IPO 끝나고 3일 만에 아무리 장외매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팔았다는 것도 책임 있는 IB의 모습인지 잘 모르겠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신주임. 그러니까 옛날 유권해석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2017년에 나온 유권해석을 보면 이 법의 취지가 코스피 IPO 시장의 안정

(Stability)을 유지하자는 것임. 그것은 법령해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IB의 입장에서는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함. 그 고민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신 것임.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3일 만에 상당 규모의 매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아까 책임 있는 IB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음.

- ▶ (진술인)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3일 만에 매각한 그 모습 자체로만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이해됨.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15,000원에 공모가 되고 주가가 13,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는 시장의 많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한국투자증권(주)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장외로 빨리 매각할 것을 원하는 투자자들도 있었음.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한국투자증권(주)이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실권주를 그냥 가지고 있다면 이 주식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식을 사지 않는 기관과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았음. 만약 저희 규정대로 1개월 이후에 주식을 팔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주)이 정말 이 규정대로 1개월 이후에 주가가 얼마가 되었든 저희가 그 위험(risk)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67만주나 되는 물량을 다 던질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상장 후 한 달 간에 OOOOOOOO(주) 주가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음. 신규 상장기업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거래량은 좀 더 떨어지고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을 투자자들이 갖는 상황에서 저희가 주식을 빨리 파는 것이 실제로 주가

에 왜곡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시간외대량매매(Block deal)을 한 그다음 날에는 섹터도 다 빠지고 OOOOOOOO(주)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많은 주주들로부터 한국투자증권(주)이 그래도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받은 적도 있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당시 IB담당자인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식을 안 팔았다고 한다면 저희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더 많았을 것임. 오히려 저희는 주식을 매도한 그 자체로만 보면 책임 있는 IB라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음.

- (위원) 시장에서 실권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빨리 내놓아라,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팔았다는 그런 변명이 어디 있는지? 주관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정한 가격책정(pricing)을 해 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임. 그런데 실권주가 나왔다고 PO 한 이후에 3일 만에 팔 수가 있는지? 물론 시간외대량매매로 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과연 정당하게 가격책정(pricing)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제대로 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함.

- ▶ (진술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귀담아듣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반드시 참고하도록 아로새기도록 하겠음. 아까 위

원님께서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검사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위반한 사례도 있고, 위반하지 않은 회사도 있고” 라는 말씀을 했음. 지금 이 규정만 보더라도 “실권주는 상장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 아닌데 왜 처분금지 대상이 되지?” 하는 의문을 가지는 회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임. 제재를 받지 않는 다른 금융회사는 언제든지 또다시 이 규정이 실권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역올함도 조금 이해하여 주시고 금융감독 당국에서 저희에게 지침(guideline)과 정확한 안내를 해주셔서 이 규정에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 또 IB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지금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본건 위반행위는 2018년 12월에 벌어졌음. 2차 유권 해석 1년 후에 벌어진 일임. ‘이유’ 부분을 보면 우선 전제를 ‘해당 규정은 모든 주식에 적용’이라고 되어 있음. 그리고 그 취지는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여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음. 그것을 전제한 다음에 해당 질의사례인 SPAC과 관련된 부분들, 이 과정에서 실권주가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음. 그런데 진술인은 앞에 있는 ‘해당 규정은 모든 주식’ 이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SPAC에만 적용된다,

그다음에 신주가 아니고 구주에만 적용된다고 그렇게 사례(case)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데 관련 취지의 문언이나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모든 주식. 권리주, 실권주, 구주, 신주 불문하고 전부 다 규정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의 취지는 상장 이후 불안정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지 말자는 취지라는 것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고, 사실 이것은 유권해석으로 구체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상식에 해당되는 사안들임. 제재심 과정에서 과태료가 상향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유사사례가 있었음. 비교했을 때, OOO는 매각시점이 상장 후 25일째이고 매각금액은 8.9억 원, OOOO은 매각시점이 상장 후 30일째이고 매각금액은 46.9억 원인 것에 비해서 한국투자증권(주)은 상장 후 3일째에 매각이 이루어졌고 처분금액도 한 115억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 한 900억 원에 해당하는 거의 10% 넘는 수량이었음. 그래서 제재심 심의과정에서 위반의 계량적인 영향력이나 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 과거 OOO나 OOOO 사례보다 위반의 정도나 하는 부분들이 컸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과태료 산정기준상 위반의 결과를 '중대'로 상향했던 부분임. 참고로 본건 115억 원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매차익도 한 13.8억 원 가량 발생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음. 이것이 장중대량매매방식이었고 그것이 당일에는 주가 영향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다음날 주가에는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음.

- (위원) OOO는 아까 진술인들도 얘기했지만 SPAC 사안인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SPAC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 고려되었다는 말씀인지.
- (보고자) OOO의 위반행위 시점은 1차 유권해석과 2차 유권 해석 중간이었음.
- (위원) OOOO은 SPAC 사안인지? 아니면 일반공모 IPO 사안인지?
- (보고자) 일반 IPO였음.
- (위원) OOOO은 조치 시기가 언제였는지?
- (보고자) 작년에 조치를 마쳤음.
- (위원) OOO도 SPAC이니까 기존 출자금 5%에 IPO 때 실권주를 들고 있는 사안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OOOO도 구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구주 없이 IPO 하는 과정에 실권주

받은 사안은 이 사안으로 저희가 처음 제재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 건 검사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위반사항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 위반사항도 두 번째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이나, 후이냐에 따라서, 일단 위반으로 가고 그렇게 양정이 갈리는, 지금 이 건대로라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그리고 신금투 때 쟁점이 되었던 것이 000 위반행위 자체가 2차 유권해석 이전이었음. 그래서 사례조사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었고, 그런데 본건 위반사항은 2차 유권해석 이후에 나온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쟁점은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음.

○ (위원) 제재심에서 상향이 되었음. 당초에 검사국에서는 어떤 배경 하에서 그렇게 안건을 올린 것인지?

- (보고자) 제재 일관성 측면에서 유사사례를 참고했는데 000를 참고했음. 그때 000는 2차 유권해석 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해서 과태료 면제 처분이 의결되었음. 그러한 유사사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위반결과 자체를 가장 중대한 부분으로 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사항들이 있었음. 참고할만한 부분이 면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위반의 결과를 바로 '중대'로 가져가기에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중간단계인 '보통'으로 가져갔는데 다

만 그 과정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제재심 심의과정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점들이 부각되면서 수정심의된 사안임.

- (위원) 1차 유권해석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2차 유권해석이 또 나간 것임. 1차 유권해석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항의 취지는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음. 1차 유권해석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발행가격을 높게 산정한 경우 단기간 내에 처분하게 하면 소위 시간이 좀 흘러서 수급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기 전에 높게 형성한 공모가 혜택을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1차 유권해석이고 2차 유권해석은 일단 상장 후 단기간 내에 매각하게 되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인데 2차 유권해석에 위반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음. 그런데 문제는 1차 유권해석의 이 조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따져 보면 이해관계에서 공모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 사안은 공모가가 먼저 정해지고 나중에 실권이 발생했는데 회사의 주장이 맞다면 그 사이에 바이오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와서 갑자기, 그 당시만 해도 바이오 열풍이어서 공모가 나오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분위기였는데 일반투자자들 공모 분야,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임. 1차 유권해석이 정하고 있는 이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떠신지? 처음부터 구주를 들고 있었던 사안과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공모가가 설정되고 그다음에 실권주를 가지게 된 사안. 지금 이 사안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그 비난 가능성

이나 위반의 태양 정도를 어느 정도에 위치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구주를 들고 있는 사안은 1차 유권해석에서 정한 내용과 2차 유권해석에서 정한 내용을 다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그런데 이 사례는 1차 유권해석에서 정한 내용에는 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차 유권해석에서 정한 내용에는 반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 건을 처리하면서 그런 1차 유권해석과 2차 유권해석에 대해 고민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보고자) 1차 유권해석과 2차 유권해석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취지를 각각 기재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지금 말씀대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단기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함. 지금 말한 대로 회사가 첫 번째 취지의 사유로 처분이나 투자자 수요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런 상황에서 상장 후 3일 만에, 아직 주가가 불안정한 시기에 IPO 물량이 많은 부분을 매도를 했어야 되었느냐, 이미 그때는 금융위 2차 유권해석도 나와 있었던 때이고 그 부분들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었던 사안들임. 말씀대로 첫 번째 유권해석의 취지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단기간에 주가에 안정적인 형성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모두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음. 회사가 말한 대로 투자자들의 고려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장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지금 말한 대로 첫 번째 그런 가격요소들을 고려해서 상장 이후 30일이 지났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해당 규제의 취지나 그런 부분들을 준

수한 적법한 매매양태였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저도 2차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함.

- (보고자) 회사는 2차 유권해석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이미 공개가 된 후 1년이 더 지난 시점인 것이고 2차 유권해석도 다른 증권사가 SPAC 관련 실권주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업계에 다 공론화가 되어 있던 사안이었음.

- (위원) 주관회사가 단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됨. 그래서 위반의 결과를 '중대'로 보는 것에 저도 이견은 없음. 다만, 유권해석의 취지가 단기간 내 주식을 처분해서 주가에 영향을 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회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를 했다는 말임. 이런 부분이 양정에 고려될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음.

- (보고자) 회사는 당시에 3일 이내에 던지게 되면 시장에서 한 100억 원 이상 가까이 던질 수 있는 우려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까지 얘기를 했음. 실제로 공모가격이 과도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청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미달이었고 그것을 인식했고, 그런데 공교롭게 그것을 1,000원 정도 이상 더 높은 가격에 팔았는데 거기에서 이득을 보게 된 것임. 그런데 회사는 여기에서 자기들이 얻은 이익이 아

무것도 없고 본인들은 굉장히 선량했고 발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가 그 주장을 다 사실대로 듣는다고 해도 아주 공교롭게 회사는 수요예측에 실패했고 아주 높은 가격으로 발행했고 거기에서 이득을 보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음. 단순한 위반상황에 불과해서 우리는 지킬 의무가 없었고 업계에도 만연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우리가 던지는 것을 원했고 가격이 빨리 떨어져서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업계 태도를 시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함.

- (위원) 한 가지 질문이 있음.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법령해석 회신문이 이와 관련해서 하나가 더 있음. “고유계정 외에 신탁계정에서 보유한 것도 이 30일에 해당이 되는지?” 라고 했더니 동일한 담당자가 동일한 취지로 “모든 주식에 해당이 됨. 따라서 고유계정뿐만 아니라 신탁계정에 보유한 주식도 30일 이내에는 팔면 안 됨.” 그런 회신문이 있음. 그 두 가지를 보고 업계에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여러 번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확인을 한 사항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제재심에서 이것을 ‘중대’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판단이라는 생각을 저도 했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OOO 본부장님이 바뀌었음. 의사결정자인지? 아니면 조직도상에서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인지 궁금함. 이분이 인지하고 결정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함.
- (보고자) 전결권자로서 행위자가 맞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맞음. 해당 관련 문서에 매도 관련된 결재자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이었음.

- (위원) 감사국의 초안은 위반결과가 '보통'으로 봤던 것을 제재심에서 '중대'로 변경한 것임. 제재심에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어떤 논거로 제재심에서 그렇게 상향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더 설명해 주길 바람.

- (보고자)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주관회사로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아직 주가가 안착이 안 된 종목에 대해서 단기간에 매매를 했던 부분이 주관회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었음. 이것을 과거 사례들과 양적인 비교나 그런 부분으로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사안들이었음. 저희가 과거 유사사례로 적시를 했던 매각시점, 매각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은 상장 후 3일째 되는 날 바로 이루어졌고 매각한 금액도 전 사례보다는 많았던 점, 그런 부분들이 위반 정도에 있어서 과거 두 개의 사례보다는 더 위중한 사례로 주로 판단이 되었음. 유권해석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처음보다 두 번째 것이 좀 더 강화되게 해석했다고 보임. 첫 번째는 기존 주식에 대해서 공모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었고, 두 번째 유권해석에서는 취득한 다음에 단기간 내 시장에 매각해서 시장변동성에 영향을 가능하면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이 나간 취지로 이해가 되어서, 그리고 아까 진술인 의견진술 할 때 2019년부터는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갖추어서 했다는 말에 미루어봤을 때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갖춰서,

만약에 거기에서 의견이 있었으면 다시 한 번 저희한테 회신을 해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음. 위반 시기는 2018년이었고 그 이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니까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약간 늦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음. 대체로는 2017년에 유권해석 나간 이후에는 실권주에 대해서도 SPAC과 마찬가지로 해서 30일 내에 매각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임.

- (위원장) 위원님들 취지에 따라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상향한 대로 오늘 의결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한 번 보류를 해서 몇 가지 따져 볼 점도 있다고 생각됨. 업계의 실태, 외국에서 실권주까지 실제 그렇게 하는지, 추가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최종 보류의결을 하기 전에, 동건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하반기에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감원 검사국이 바쁘다 보니 제척기한에 촉박해서 제재사안을 쪼개서 올라오는 경우가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안건을 전체 검사결과의 취지에 맞게 함께 상정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그다음에 저희 증선위나 금융위에서는 제재 수준을 상향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재대상자에게 다시 제재예정 통보를 2주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함. 그런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제재심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는지?
- (보고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재심 전에 사전통지를 할 때

양정의 수준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밴드(band) 형태로 제재를 함. 위·아래로 각각 상향된 것, 하향된 것을 하기 때문에 상향된 결과도 저희가 사전통보한 내용 범위 내에는 포함이 되어 있음.

- (위원) 밴드(band)를 정해서 통보를 하더라도, 밴드(band) 내에서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진술 기회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제재수위는 단순하게 경계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수위로 올라가는, 임원 결격사유가 나오는 조치로 올라가는 제재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알려서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보고자) 그 부분은 저희가 제재심 담당하는 부서와 절차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47호 『NH투자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안건 1페이지 하단에 적시해 주신 것처럼 '과거 조치

사례 등을 고려해 7영업일을 적용'이라고 해서 7영업일로 보되 7영업일을 지난 사안에 대해서도 개별 구체적인 고려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2022년 5월2일부터 5월27일 사이에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위반 건수 7건 중 5건은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해서 2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5건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경과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 (보고자) 검사는 작년 5월에 이루어졌는데 위반내역이 2018년초여서 상당히 과거 건이었음. 그래서 과태료 제척기간은 도래했지만 신분제재를 감안해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중조치를 제재심에서 결정했음.

○ (위원) 그다음 질문은 이 건이 설명의무는 이행을 했으나 확인절차만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 (보고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고객들의 확인서를 받았는데 설명은 받았다고 본인들이 다 진술해서 설명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파악을 했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질서

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임.

- (위원) 규정을 보니까 설명의무는 이행했지만 확인절차만 누락하는 형식적인 법규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규의 본질적인 절차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예정금액의 50%를 감경하는 규정이 있던데 이것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보고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처리될 사안에 대해서 부당권유로 조치될 사항이 있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음.
- (위원) 회사 측 설명을 들으면 실수 내지는 설명은 했으나 확인이 미비한 것인데 '상'으로 보셨다면 '고의'로 본 것인데 어떤 의미의 고의인지?
 - (보고자)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령은 준수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 본인이 준수해야 될 법규나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한 것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임직원이 지금 총 7건을 위반했음. 한 사람만 7건을 위반했음.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1~2건이 아니고 1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7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고객신청 계약을 할 당시에 서류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확인받도록, 추가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류 신청서 자체에 확인을 받는 란이 있음. 이 부분을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로 보기에

금융회사 임직원이므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형식상으로도
했어야 되는 중요한 절차라고 봤기 때문에 '상'으로 적용을 했음.

○ (위원) 만약 확인을 받으려면 설명을 들었던, 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주춤
하고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확인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고의로 보셨다는 것인지?

- (보고자) 과거 사모펀드 판매가 선가입 후 미비된 서류를 작성
하는 관행이 있었음. 그렇다 보니까 고객한테 설명은 전화나
유선이나 다른 자료로 배포는 하되 서류 자체를 나중에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임.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런 관행들이 좀 있음. 이
건의 경우에도 2018년 당시에 사모펀드에 가입시키기 위해
서 고객한테 먼저 돈을 받고 가입을 한 다음에 서류를 작성
하다 보니까 절차가 지연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사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음.
그것도 관행이었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서
류들을 정리하는데 그렇다면 많은 가입 건에 대해서 금융소
비자보호부가 전화를 해서 사후에 확인을 받는 것도 관행이
있는지? 아니면 이 건만 그런 것인지?

- (보고자) NH투자증권(주)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수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검사했을 때 나온 것이
지금 이 7건임.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 규정에 맞게
했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해피콜은 부서가 전혀 다른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임. 판매 후에 확인을 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건과 전혀 다른 절차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누락하면서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그런 것은 아님. 다른 직원들은 당연히 판매 당시에 그 절차를 준수했고 이분은 안 했지만 콜센터에서 전화 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음.

- (위원)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당연히 금융관련 법령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한다면 '고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음. 왜냐하면 올라오는 것이 전부 금융회사 직원이고 다 금융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과실'이나 '과실'을 둔 이유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분 과태료 대상 건이 아까 부당권유가 있다고 했지만 13일, 18 영업일까지 서류보완이 이루어졌음.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이 규정을 알고도 만연히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안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3일이나 18일까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한 경우와 다른 부정한 의도가 개입된 사안과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이 설명확인 의무 위반을 저희가 '중과실'이나 '과실'로 처리한 경우가 있었는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안인 경우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가 궁금함.

- (보고자)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OOOO 같은 OOOOOO(주)의 사례였음. 그때 증선위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guideline)이 있었음. 원

칙적으로 가입 당일 날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 다만, 7영업일을 그래도 고려해주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 아니라 고객의 사정. 고객이 병이 있어서 입원을 했든지, 갑자기 해외출장이나 휴가를 가서 만날 수 없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고객의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7영업일을 둔 것임. 7영업일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전부 다 '상'으로 조치를 했음.

-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논의와 조금 다른 것 같음. 저도 그 논의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즉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과거 사례에서 7영업일 이내에 하면 즉시로 한 것으로 봤고 7영업일을 넘어가는 사안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 그 논의였던 것으로 기억함.
- (보고자) 수정하겠음. 7영업일까지는 저희가 조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고, 7영업일이 넘어갔을 때 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작년에 OO 건을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중'으로 낮추어서 의결을 한 적이 있음. 그 외에는 전부 다 '상'으로 처리를 했음. 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감경처리한 사례가 없음.
- (위원) 일단, 지연된 것에 고객사정이 있다고 진술인의 자료에 기재되어 있음. 고객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음. 두 번째는 가중한 이유가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하셨음. 그 동일

한 법규위반이 여기 7건 중에 5건 제척기간 지난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재사안이 있어서 별도의 제재를 받았다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고자) 첫 번째 고객의 사정은 회사 측에서 고객들로부터 탄원서 비슷하게 제출한 것이 있음. 고객들이 모두 사업자로 사업상 바빠서 이것을 못 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기명 서명을 받는 것만 아니라 녹취라든지 우편으로 주고받는 대체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임. 두 번째 가중사유는 2018년 3월에 동일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사례가 있어서 가중조치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작년에도 OOOO 제재를 하면서 동일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한 바가 있음. 다만, 행위 자체가 이것은 2018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2018년에 조치한 것을 가지고 가중한 것임.
-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의무는 이행했지만 확인절차만 누락한 경우 예정금액의 50%를 적용한다는 그 규정이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분리처리한 사안인데 설명의무 또는 부당권유로 조치할 사항이 남아 있음.
-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설명의무는 이행한 것

으로 봤다고 답변을 하셨음.

- (보고자) 지금 이 7건에 대해서만큼은 설명의무 위반사항으로 특별히 적발한 사안이 없는데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으로 조치할 사안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임.
- (위원) 지적하고 있는 이 2건에 대해서 부당권유가 있느냐 하는 것임.
- (보고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관행상 먼저 사모펀드에 좋은 펀드가 나오면 관리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가입 권유한 후에 추후에 서류를 구비하는 관행들이 있었음. 이 건도 검사현장에서는 비슷한 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고객들이 일부 환매 중단이 안 된 펀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는 식으로 진술을 받아온 것임.
- (위원) 그런데 1건은 금소부에서 모니터링 전화를 해서 고객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받았음. 그러면 법규의 본질적인 취지는 달성이 되었고 형식적인 절차만 위반한 것 아닌지?
- (보고자) 위원님, 해피콜이라는 것은 설명의무 이행절차와는 전혀 별개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만족도 조사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음. 이것은 상품판매부서도 아니고 소비자보호부 쪽에서 판매가 완결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설명한 직원이 친절했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했느냐는 것을 확인 (check)하는 사후적인 서비스절차인 것이고 법적 절차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절차임.

- (위원) 2022년 4월 OO 건에서도 이와 똑같은 쟁점이 있어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확인절차라고 보기에 어렵고 내부에서 우리 부서들이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고객센터서비스모니터링부에서 “서비스 잘 받으셨는지?” 하는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절차라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음.
-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음. 이것이 설명의무는 이행했는데 확인절차만 누락한 것이냐 아니면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을 제가 처음에 드렸음. 그런데 분명히 답변하실 때 설명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변을 하셨음.
- (보고자) 물론 설명의무를 진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원래 판단하는 기준은 표기(check)를 했느냐 하는 것임. 고객들이 설명 듣고 이해했음에 본인들이 자필서명을 하든지, 표기(check)를 했으면 ‘아, 이것은 했겠구나’ 라고 전제를 하지만 일단 저희는 아니라고 봤음. 서류구비도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봤는데, 다만 고객의 탄원서상에 설명을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임. 검사반의 입장은 설명의무가 정말 이행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은 있음. 다만,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하기 때문에 과태료 위반사항으로 조치를 한 것임.

- (참여자) 혹시 고객께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2건에 대해서, 고객이 설명을 들었다는 진술서는 두 건이 제출되어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것은 사후에 보완해서 확인(check)된 것임. 그것이 13일과 18일이 지나서 확인(check)한 것임.
- (참여자) 그 자료에 기준시점은 최소한 처음 상품판매되었을 때 그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것은 자료가 없음. 자료는 없고 고객이 진술하면서 설명을 들었다는 식으로 탄원서로 제출한 것임.
-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피콜 부분은 분명히 확인의무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설명의무는 이행했지만 확인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감경이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것을 검사국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면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임. 그런데 이 50% 감경조항이라는 것이 저희 증선위 판단에 있어서 꼭 따라야 하는 것이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면 이 부분을 감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또 하나의 쟁점이 어쨌든 위반동기를 '상'으로 보셨는데 과연 이것이 '상'으로 볼 것인지, 어쨌든 고객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통상 7영업일에서 하루 이틀 늦어졌다는 것임. 그런데 그것까지 금융회사 직원은 다 알아야 한다고 해서 '상'으로 하면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중과실’, ‘과실’은 없게 되는 것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쟁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위반동기는 ‘상’이 아니라 ‘중’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임. 마지막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느냐 하는 것으로 50% 감경 여부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로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NH투자증권(주) 불완전판매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혹시 증선위가 이 부분은 정상을 배려할 부분이 있는지, 감경할지 안 할지를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아까 추가감경은 별건 없이 딱 이 건만 있다면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기간이 지난 나머지 5건에 이 동일인이 했고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꼭 해야 하는(must) 것이 아니라면 이 건은 50% 감경을 좀 검토해 볼 사안인 것 같음.
- (보고자) 위반동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중지(衆智)를 모아 주시는 대로 따르면 될 것 같음. 제가 이해하기로 검사제재 규정 50%와 관련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불확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취지를 보면 확인절차를 누락한 것도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뒤의 해석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음.
- (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반동기는

‘상’이 아닌 ‘중’으로 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면 5,760만 원으로 하고 50% 감경은 NH투자증권(주)의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감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7호 안건은 위반동기를 ‘중’으로 보아 과태료를 7,200만 원이 아닌 5,760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48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현재 ■■■■이 ◆◆◆에게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주)○○○이 부품 공동개발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의심받고 있으나 과거에 두 사람의 주식투자종목이 겹친다는 사실 등은 모두 정황에 불과하고 본건 당시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의 대표이사였던 ■■■■이 코스닥 상장사인 (주)○○○에 투자하려던 시기에는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주)☆☆☆☆가 다액(多額)의 개발비와 시간을 투자하여

제작한 신제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로 인한 소비자의 항의, 이어진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던 시기로써 회사의 대표이던 ■■■■은 회사의 명운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던 시기였음. 그 당시 (주)○○○과 협상과정을 보면 (주)☆☆☆☆☆가 (주)○○○에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참여한다는 정보 내지 사실 자체도 긴박한 협상결과 공시 직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확정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런 정보를 ◆◆◆에게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은 과거의 두 사람의 관계만 보았을 뿐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음. 이와 같이 본건 당시 ■■■■은 공정위 고발에 따른 검찰수사, 피해자의 항의 등 회사가 직면한 큰 위협을 감수하던 상황이었고 (주)○○○과의 공동개발 등의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던 시기였음. 그런 상황에서 회계사 출신인 ■■■■이 ◆◆◆를 만나 자본시장법상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전달하는 위협을 무릅쓰고 투자정보를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 금감원 조사에서 본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과거 두 사람의 투자종목이 겹친다는 정황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 통보안을 제출하였으나 ■■■■과 ◆◆◆가 투자한 주식 중 종목이 겹친다는 주식들 대다수는 일반투자자들도 자신의 투자판단에 따라 충분히 투자가능한 종목이었음. 종목이 일부 겹친다는 간접적인 정황만을 근거로 평소 ■■■■과 ◆◆◆가 긴밀하게 투자정보를 교류하였다거나 나아가 본건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였다고까지 추론하는 것은 지나친 추정이라고 할 것임. 미공개정보에 관하여 최소한의 구체적 정보 교류

흔적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과 ◆◆◆가 당시 어떤 교류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되어 검찰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하지만 ◆◆◆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정황만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에게는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됨.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 초 주가가 폭락한 이후 시장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였음. (주)○○○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어느 정도의 등락이 존재하였고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특히, (주)☆☆☆☆ 또는 (주)○○○ 직원, 이 사건과 관련된 두 회사의 직원이나 그 직원들의 관련자들이 당시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처벌된 사례가 없었음. 그럴 정도로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이는 당시 (주)○○○의 주가 상승이 전체적인 흐름과 비교했을 때 주목할만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인식되었기 때문임. 게다가 ■■■■은 (주)☆☆☆☆의 (주)○○○에 대한 투자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는데 ■■■■ 본인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던 ◆◆◆에게 미공개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심은 납득하기 어려움. 부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씨는 ◆◆◆씨와 적지 않은 금액의 자금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자조심에서는 ◆◆◆씨가

■■■씨로부터 10억 원 넘게 빌려서 8억 원 넘게 상환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2020년 초 5억 원을 투자목적으로 빌려줬는데 상환받으면서 이자도 받지 않았다 되어 있는데, ■■■씨가 자력이 상당하신 분인지?

▶ (진술인) 제가 원래는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었는데 (주)☆☆☆☆ 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식을 일부 매입했음.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씨가 근무하던 (주)★★★★★에서 2012년도에 제가 투자받은 이후에 2015년도 투자금 회수(exit) 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지분을 매각했는데 저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같이 매각했음. 그래서 약 150억 원 넘는 2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벌게 되어서 현재는 굉장히 재력이 있는 편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씨에게 도움을 받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씨가 나중에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빌려주게 된 일이 있었음.

○ (위원) ◆◆◆씨는 어떻게 얘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신 것인지?

▶ (진술인) ◆◆◆씨가 저와 가끔 만나는 관계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본인 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했음. 2016년경인가 2017년경부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도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언젠가 은퇴하고 해야 될 텐데 본인 명의로 집 한 채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했는데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서 투자를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자금을 빌려주게 됐음.

- (위원) 상식적으로 자가(自家)가 없으신 분이 5억 원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것이, 투자수익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런 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음. 빌려주신 분도 투자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빌려주신 것이고, 그분도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제한된 기간 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5억 원을 빌려서 돈을 빌려주신 분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 ▶ (진술인)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함. 제가 알기로는 ◆◆◆씨는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라든지 투자 관련한 전문가로 알고 있음. 그래서 제가 빌려준 돈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 상장회사도 일부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제가 잘 모름. 오며 가며 주식 관련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지 그런 것은 알지 못함. 주식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결국 그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투자수익 기회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당시에 어쨌든 ◆◆◆씨는 굉장히 불안해해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으로는 힘들고 뭔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재산을 축적해야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음.

○ (위원) 2020년 8월24일부터 8월28일 사이에 ◆◆◆씨를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 있으신지?

▶ (진술인) 그런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위원) 전혀 통화하거나 만나신 적 없으신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8월24일에 (주)○○○ 대표이사 ★★▲씨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승인한 이후에 9월9일에 유상증자 내용을 공시 하는데, 8월24일부터 9월9일 사이에 양사 간에 어떤 논의와 진행과정이 있었는지?

▶ (진술인) ★★▲씨가 8월24일에 승인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음. 저희가 안마의자 판매기준으로는 세계 1등 기업으로 올라섰는데 생산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risk)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Made in Korea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여 여러 가지 사업적인 진행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대규모로 제조해 본 노하우(know how)라든지, 경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 제조기반을 가지

고 있는 회사와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해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음. 그래서 마땅한 업체를 모색하다가 2016년경에 (주)○○○이라는 업체를 만나게 되어서 그때부터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음. 당시 ☆☆라는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했음. 그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창기부터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합작회사(Joint Venture)로 별도 비상장회사를 설립하는 방식보다는 상장회사인 (주)○○○에 지분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 자금으로 Made in Korea 작업을 해가는 것이 저희 (주)☆☆☆☆☆☆ 입장에서 뭔가 자금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유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초반에 제안을 드렸는데 (주)○○○이라는 회사의 특성상 ★★★ 회장님이라는 분이 사실 전문경영인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회사의 오너(owner)가 되신 분임. 그래서 지분율이 굉장히 낮고 경영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함부로 그런 말씀 못 드리고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통해서만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논의가 된 2020년경에는 그 합작회사(Joint Venture)에서 생각보다 품질과 생산량이 많이 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음. 그래서 자금이 거의 다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도 투자를 할 테니까 (주)○○○도 투자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주)○○○ 측에서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agenda)여서

사장님과 최고경영층 미팅을 요청을 드렸었음. 그래서 만나뵙게 됐는데 그 미팅자리에는 ★★★ 회장님이 나오지는 않으셨고 ▼▼▼ 사장님이라고 원래 그전에 함께 하다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잠깐 고문으로 나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오셨음. 그리고 ►►► 부사장이라고 ★★★ 회장의 아드님, 이 두 분이 나오셨고 저희도 저와 저희 회사 부사장과 나갔는데 ▼▼▼ 사장님이 나오시는 바람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주)○○○에 저희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은 어떻겠느냐 얘기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음. 그래서 ▼▼▼ 사장님이 ★★★ 회장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로 해서 논의가 시작됐음.

○ (위원) 대략적으로 그것이 며칠인지?

▶ (진술인) 첫 미팅을 한 것이 8월21일, 아마 금요일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 주부터 각자 회사 돌아가서 논의하고 검토하고 시작을 했음. 그래서 검토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 회장님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최대한 OK가 됐을 때 바로 투자하기 위해서 이사회도 서둘러 소집해서 이사회 결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오고 갔음.

○ (위원) 이사회 결의가 언제였는지?

▶ (진술인) 8월27일에 이사회 결의를 했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금감원은 조치예정자가 ■■■■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하여 (주)○○○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조치예정자는 ■■■■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 조치예정자가 2020년 9월초순경 조치예정자 스스로 당시 전기차 시장의 흐름과 기본적인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여 (주)○○○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임. 조치예정자는 결제일자 기준에서 2020년 7월23일부터 6억 1,200만 원 상당의 (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2020년 8월20일경에 그 주식을 7억 9,700만 원 정도에 처분하여 1달 사이에 30% 정도의 수익을 실현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자동차 시장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주)○○○ 주식을 추가로 8월27일부터 8월30일까지 매수하게 되었음. 그 매수가액은 8억 3,500만 원 상당임. 이처럼 (주)○○○ 주식을 2차로 매수하는 시점에 흔히 주식시장에서 말하듯이 대장주가 상승하면 중·소형 주가도 상승한다고 생각해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운송장비·부품 종목 중·소형주 중에서 재무분석을 통해서 (주)○○○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던 것임. (주)○○○은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급성장하고 있었고 순자산가치가 시가총액에 비해 커서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으로 조치예정자는 판단하였음. 이에 2020년 9월1일부터 2020년 9월8일경까지 (주)○○○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임. 그리고 2020년 9월15일부터 2020년 9월28일경까지 8월, 9월에 매수하였던 (주)○○○와 (주)○○○ 주식을 같은 시기에 전부 처분하게 됨.

그리고 금감원은 조치예정자가 (주)○○○ 주식을 매수할 즈음에 ■■■■이 (주)○○○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조치예정자와 ■■■■이 2020년 8월 말경에 미공개정보에 대한 교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음. 조치예정자는 ■■■■을 2020년 8월 말경에 만난 사실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음. 2020년 3월 하순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시점이었고 전국민이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컸던 시기인데 이때 정도부터 조치예정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 주식 정도는 참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를 한 사실은 있음. 그렇지만 2020년 8월경에 ■■■■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음. 조치예정자는 ■■■■이 2020년 8월말 경이나 9월초 경에 (주)○○○ 주식을 왜 매수하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함.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뿐임. 조치예정자로서는 ■■■■이 국민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 주식을 매수한 것이 어떻게 조치예정자와 ■■■■ 간의 정보교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추가로 조치예정자의 주식 투자행태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조치예정자는 (주)○○○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장 주식의 평가액과 예금액을 더해서 46억 원 가량의 가용자금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조치예정자가 (주)○○○ 주식을 매수한 것은 불과 5억 원에 불과함. 뿐만아니라 조치예정자는 2020년 8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주)○○○ 주식을 대략 8억 원 정도, 2020년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주) 주식을 한 3억 원 정도 그리고

2020년 8월31일에는 ◆◆◆◆◆ 주식 5억 원, 2020년 9월2일에는 ■■■■■ 주식을 약 2억 원 정도 매수하였음. 흔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경우 안전하게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집중투자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치예정자는 전혀 그러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음. 그리고 2020년 당시 주식 시장은 흔히 말하는 대세 상승장이어서 조치예정자가 이례적으로 많은 투자수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있음.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초 코로나19 사태로 주식 시장이 상당히 패닉에 빠진 것은 맞지만 그 이후 정부대응이라든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음. 그래서 2020년 3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코스피지수는 97%, 코스닥지수는 126% 상승하였음. 따라서 조치예정자가 (주)○○○ 주식에 투자한 이후로 그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과연 (주)☆☆☆☆☆와 (주)○○○ 간의 부품공동개발 계획이나 (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있음. 현재 조치예정자는 벤처투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벤처투자 업계에서 핵심운용인력으로 더 이상 활약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음. 왜냐하면 출자자들이나 벤처투자회사로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을 핵심운용인력으로 내세워서 혹시라도 추후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신뢰도의 악영향을 우려할수 밖에 없음. 또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조치예정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씨는 2020년 8월28일부터 9월4일까지 (주)○○○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 (진술인) 그 당시에 (주)○○○라는 종목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었음. 그래서 7월에 약 6억 원, 그리고 1차 매도가 끝난 8월 말경에 (주)○○○를 다시 매수하면서 대장주가 가면 중·소형주도 같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주)○○○와 같이 무거운 주식이 7월에 벌써 30%나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주식이지만 조금 더 유동성을 만끽하고 싶어서 좋은 종목을 찾기 시작했음. 여기에서 제가 찾았던 종목이 (주)○○○임. 한국거래소가 운송장비로 분류된 종목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0여개가 넘었음. 제가 50여개 전부는 아니지만 몇 십 개 이상을 엑셀로, 8월15일 반기 재무제표 공시 이후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자산을 제가 일일이 엑셀로 다 기록했고 그중에서 압도적인 영업이익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이 (주)○○○이었음. 1/4분기에 -9.5%였던 것이 2/4분기 +9.5%로 거의 상상할 수 없게 올라왔고 계절성 요인을 확인하고자 전년도 2/4분기를 봤는데 전년도 2/4분기도 3.5%에 불과했음. 자동차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5% 내외인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는 것에 가장 크게 주목했음. 두 번째는 순자산도 1,100억 원이나 되었음. 그 당시에 시총은 650억 원에 불과했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에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을 사게 되었음.

○ (위원) 저렇게 취득한 주식은 언제 처분했는지?

▶ (진술인) 제가 (주)○○○ 주식을 사고 나서 9월15일부터,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9월15일, 18일부터 9월25일까지 분할매도를 했음. 여기에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를 먼저 2차 매수를 한 비슷한 시기에 (주)○○○을 샀었고 (주)○○○을 매도하면서 (주)○○○의 수익률이 저는 만족할 수익률이라고 생각했고 (주)○○○가 7월에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오르지 않았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주)○○○과 (주)○○○를 동시에 매도했었음.

○ (위원) 그러한 재무지표 같은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투자하신 분이라고 하기에 정보공개 1주일만에 처분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 공개된 정보의 재료가 소진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처분하신 것 아닌지?

▶ (진술인) 일단, 저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을 할 수 밖에 없음. (주)○○○에서 제가 30% 수익을 보고 매도했고 (주)○○○도 그 정도의 수익이면 만족한다고 생각했음.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 2019년까지는 주식 투자운용금액도 2020년에 비해 상당히 적었고 보유기간도 상당히 길었음. 그런데 제가 헤아려 보니 2020년도에 매매한 종목이 25개 이상 됨. 그래서 보유기간이 한 달 이상으로 짧은 종목도 꽤 있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큰 흐름은, 어쨌든 저는 유동성을 즐겨야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제가 (주)○○○만 가지고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을 샀을 때 일목요연하게, (주)○○○○
부터 샀던 배경 그리고 매도한 배경 이러한 것들도 충분
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자조심 때도 제가 비슷하게 여쭙어봤던 것 같은데 구
체적인 증거나 주장을 떠나서 진술인의 여러 가지 행태가
상식적이지 않음. 첫 번째는 어쨌든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으로써 한 때 피투자기업이었던 분과, 물론 나중에 투자실
적이 좋아서 좋은 신뢰관계를 쌓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것은 개인적인 이유임. 아직도 금투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
하는 분이 한때 피투자기업이었던 분으로부터 거액의 금전
차입을 하고, 더군다나 무이자로 차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음.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46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벤처투
자회사라고 하면 회사가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러
면 투자한 것에 대한 이해상충이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회사와 감사 쪽에 보고를 했을 것 같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
해상충을 떠나서 어쨌든 그 회사의 임직원으로써 투자행위
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선관의무가 있음. 그런데
4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제가 진술인만큼 뛰어난 사
람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
지, 내가 회사의 본업으로써 그런 것에 굉장히 소홀할 것이
라는 생각이 듦.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투회사의 임직원
으로써 이것이 옳은 행위인지,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음.

- ▶ (진술인) 제가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대로 설명을 하겠음. 일단, 지난번에도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비상장벤처투자의 임직원들은 출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기조항도 없음. 단,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주식 현황보고서를 제출함. 그리고 가장 큰 컴플라이언스는, 비상장 투자에 대해서도 제한은 없는데 제가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상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컴플라이언스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그러면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이 친구가 취득한 시기, 보유한 기간, 보유한 금액에 비례해서 이것이 IPO를 준비하고 있으니 내지는 IPO로 가고 있으니 너는 자진락업(Lock up)을 걸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든지 하라고 하달을 해 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고, 다른 벤처캐피탈(VC)들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상장 주식을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음. 두 번째 46억 원이라는 돈은 9월에 계속 투자한 것이 아니고, 2019년까지 제 주식 투자금액은 5억 원 남짓이었음. 그런데 2020년에는 저 개인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모두 겪으면서,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적극적인 매수를 해 보자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제가 항상 주식 계좌에 가지고 있던 금액에 비해서 커졌던 이유는 주식평가금액이 꽤 커졌음. 한 종목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46억 원으로 커진 것이고, 지금은 약 10억 원 남짓한 5종목을 1년 이상 바이앤홀드(buy&hold)로 보유하고 있음. 2020년의 경우에는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당히 많은 투자금액과 상당히 많은 매매를 통해서 적극적인 주식매매에 임했다는 점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차입 관련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러한 고마움을 표시했던 박대표에게 돈을 빌린 시점이 대부분 2020년 초였는데 정말 투자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부탁했고 이러한 행위가 올바른 것 같지는 않음. 그래서 가급적 빠르게 갚고 있고, 사실은 나머지 2억 원도 원래 계획은 연초에 다 갚는 것이었는데 금감원의 이런 조사 분위기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지만 빠른 내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음. 지난번에 의견진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 혹시 회사에서 이사회가 개최되면 노조위원장도 알게 되는지?

▶ (진술인) 제가 첫 위원장이 됐을 때 주주총회 때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음. 그 이후로는 어떤 이사회에도 참석해본 적이 없음.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진술인, 오셨으니까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당시 상황들은 의견진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함. 사실 가깝지는 않지만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함. 그런데, 그때 저희 집안 개인적인 어머니 건강문제로 사정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들여다봐 주시면 고맙겠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으로부터 ◆◆◆로의 정보전달 채널에 대해서 안건에 있는 내용은 읽어봤고, 이런 점에 비추어봐서 정보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우선, (주)○○○ 주식을 매수한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주)○○○ 주식 한 종목이 아니라 2020년도에 ▷▷▷▷▷ ▷(주)라는 주식을 ◆◆◆는 6,000만 원 3월9일에 매수했음. ■■■■은 3월12일에 1억 6,000만 원 매수했고, (주)♀♀♀♀ 주식을 ◆◆◆가 5월6일에 14억 원, ■■■■이 5월6일에 8억 6,000만 원을 매매했음. (주)♀♀♀♀라는 종목을 2020년 6월 10일 ◆◆◆가 2억 원, ■■■■ 6월17일 2억 1,000만 원을 매수했음. (주)○○○는 8월25일에 ◆◆◆가 8억 3,000만 원, ■■■■이 8월28일에 2억 5,000만 원을 매수했음. 이와 같이 ◆◆◆가 같거나 며칠 사이로 빨리 매수를 하고 따라서 ■■■■이 매수를 하는 그런 양태를 다른 종목에서도 다수 발견

되고 있음. 또한, 아까 2020년도 6월에 빌렸다는 5억 원의 자금은 (주)♣♣♣♣♣라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들어갔고 이 주식은 ■■■도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매매를 했음.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평소에 충분히 교류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주)◎◎◎를 ■■■이 8월28일에 매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 (주)○○○을 8월28일 매수하기 시작했음. 그래서 그 직전에 정보가 교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근거이고, 다른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의견을 구한다고 했는데 ☆☆라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안마의자를 생산해온 것이 2016년부터임. 처음 기대와 달리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중저가 의자를 개발하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이 ◆◆◆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임.

-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수사기관 통보하면 그 부분 수사가 되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저는 사실 이 안건 보면서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식으로든 거래에 관여했던, 물론 금융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10억 원을 무상으로 받아서 쓰는 관계가, 아무리 ■■■씨가 돈이 많아도 이래도 되는 것인가, 또는 언뜻 보면 이분은 상환의사가 원래 있었나 하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함. “빨리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혹시 금융위 소관 법은 아니더라도 이 회사와 관련된 법이나 타법 위반상황으로 저희가 볼 만한 상황은 없는지? 사실 10억 원의 이자만 해도, 그 무렵 이자가 낮은 시기는 사실 아니어서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또 돈도 있는 분이 그것을 금전으로 치료비로 썼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음. 더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이쪽에 계신 분이 다 그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40종목을 본인이 퇴근해서 다 했을리는 없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이 문제될 사항은 없는지도 한번, 만약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문제가 되면 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적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음. 왜냐하면 아까 진술내용에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 안 갚은 것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안전 자체에는 다른 의견 없음.

- (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금전차입, 특히 무이자로 차입을 한 부분은 형사적으로 사후수뢰죄 이런 것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됨. 수뢰죄가 공무원 범죄여서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혹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지 부분을 조금 더 보셔서 수사기관 통보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미공개정보 건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금감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임. 이것이 2021년 8월에 한국거래소에 통보되었는데 조금 서둘러서 보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공동조사라든지, 긴급조치 (Fast track) 같은 것도 더 고민해 주시고, 수사기관에 보내더라도 증거확보에 용이할 수 있게 실기하지 않는 노력을

더욱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유념하겠습니다.

○ 원안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결함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 의결안건 제149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는 코넥스에 상장되었다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된 기업임. 문제가 되고 있는 (주)○○○○○의 대표 ●●● 대표와 부부관계여서 옆에서 보고 코스닥 상장 이전 4~5개월 전에 9천여주 매입했다는 것만으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서 매매했다고 혐의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함.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듦. 더군다나 ●●● 대표이사는 이 사건 조사받는 과정에서 암으로 사망하셨음.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한 것이라고, 재판과정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움.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의 경우에는 2차 정보수령자로 보여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자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이렇게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대상자로 봐서 경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바람.

- (보고자) ▲▲▲와 ◆◆◆은 각각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동일 계좌를 이용했고 매매대금이나 매매거래 내역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분되지 않음. 그래서 동시에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1차 정보수령자로 조치하고자 함.

○ (위원) 그런데 ◆◆◆의 계산으로 들어간 자금이 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공범이면 부당이득금액을 합산해야 되는지?

- (보고자) 그래서 합산을 했음. ▲▲▲는 본인 해당 금액만임.

○ (위원) ◆◆◆도 합산해야 되는 것 아닌지? 자기 계좌를 빌려주어서 공범으로 같이 거래를 했으면, 공범끼리는 부당이

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 공범으로 보면서 한쪽에만 합산하는 것이,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정리를 할 부분인 것 같음. 만약에 둘을 공범으로 봤으면 부당이득은 공범끼리 합산하는 것이 맞고 공범이 아니라 2차 정보수령자로 봤으면 ◆◆◆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부당이득을 ▲▲▲ 쪽으로만 몰고 ◆◆◆은 ◆◆◆ 것만 계산해서 금액이 적으니까 '경고'로 하는 것은 약간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음.

- (보고자)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에도 1,00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 부당이득을 ◆◆◆의 경우에는 900 얼마이던데 그것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임.

- (보고자) 정보를 전달한 ▼▼▼와 정보를 전달받은 ▲▲▲, ◆◆◆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인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와 ◆◆◆이 동시에 받았다고 판단을 했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실제 매매주문을 핸드폰으로 내고 있는데 각각의 핸드폰으로 확인이 되고 있음. 그리고 자금도 저희들이 어느 한쪽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 자금과 ▲▲▲ 자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계좌를 이용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 것으로 봤음. 그래서 실제 정보를 전달했던 ▼▼▼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부당이득금액을 봤음. 다만, 조치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계산이다 보니까 계산주체별로 조치수준을 양정할 수밖에 없었음. 그렇기 때문에 ▲▲▲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되

고 ◆◆◆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대상이 되었음.

○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분을 공범으로 보셨는데, ▲▲▲와 ◆◆◆. 공범으로 보면 공범끼리 부당이득을 합산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정해진 판례들 아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범으로 보면서 부당이득계산할 때는 별도의 계산주체로 봐서 경고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쭙어 본 것임.

- (보고자) 공범으로 보는 경우에도 본인의 역할 그런 부분으로 부당이득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는 ◆◆◆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을 ▲▲▲의 부당이득까지 모두 합산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

○ (위원) ◆◆◆씨 계좌로 거래한 것 아닌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런데 논리가 약간 충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 만약에 공범으로 안 보고 2차 정보수령자로 간다면 2차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 못하니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가면 되는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가지 않는 이유는 둘을 공범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부당이득은 나눈다고 보셔서, 그러니까 부당이득 위에 정보를 전달해 준 채널과 관련된 분도 그렇게 묶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둘 사이는 어찌면 경제적 공동체로써 같이 한 것이라고 해서 공범으로 봐서 처

리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신 것이 약간 납득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향후 이 논리는 금액과 관계없이 계좌 빌려준 사람들은 앞으로 이용한 사람 것은 빼고 간다고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임.

- (보고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음.

○ (위원) 어찌 되었든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뒤의 부분은 또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필요할 것 같음.

○ (위원) ○위원님 지적이 나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음. ◆◆◆에 대해서는 정보사항 통보도 없는지?

- (보고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음. 그런데 현재 문서로써 조치할 예정은 없음.

○ (위원) 그런데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계좌의 인증서를 ◆◆◆이 ▲▲▲에게 주지 않은 이상 ▲▲▲의 지시를 받아서 ◆◆◆이 다 자기 계좌로 ▲▲▲ 계산한 것도 샀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고로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음.

- (보고자) ◆◆◆에 대해서는 수사정보사항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같은 계좌에 자기 돈을 끼워서 같이 한 것이니까, 동 건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사항으로 함께 보내는 정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어쨌든 부당이득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실익이 크지 않는 면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되, 일반투자자 ★★★는 흔히 말해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이분이 아마 임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통보를 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지금 요약자료에 이분이 일반투자자로 잘못 기재된 것 같음.
- (위원) 이렇게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통보가 되면 검찰에서 이 부분 실질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이분은 어쨌든 몰랐는지?
- (보고자) 본인이 잘못된 것을 다 인정하고 회사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매매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저희는 외부기준으로 1%가 넘으면 위반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보고 있음.
- (위원) 차명을 이용한 것이 ★★★ 이분이 아니라 ●●● 이런 분들인지?
- (보고자) ★★★ 본인도 친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따로 매매를 한 것임.
- (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9호

안건은 조치안 대로 수사기관 통보를 하되, ◆◆◆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으로 함께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33호 『(주)씨젠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31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보고』, 보고안건 제32호 『(주)○○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보고』, 보고안건 제33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 보고안건 제34호 『(주)○○○○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보고』를 일괄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같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10호 『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재심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본 안건이 재심의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조치 대상자가 재심 신청을 했는지?

- (보고자) 아님. 재심 신청하지 않았음.

○ (위원) 제가 보기엔 재심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음. 과징금에 대한 최종 조치 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재심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직권재심인 경우에는 심의 당시에 고려했던 사실관계가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있는 것이어서 재심 사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임.

- (참여자) 마찬가지로 생각임.

○ (위원장) 저도 증선위가 재심 결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증선위가 이런 의견을 냈다는 내용을 지금 금감원에서 보고한 사항과 함께 금융위 안건검토소위원회와 금융위에 보고를 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0호 안건은 작년 조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50호 『(주)OOOOO 등 4개사의 회계관련 부정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51호 『동아송강회계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